

2022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1)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각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2022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계획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대상 :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나. 평가 내용

- 1) 금천문화재단(2021년도 실적) 기관 경영평가
- 2) 금천문화재단(2021년도 실적) 대표이사 성과평가
 - 2기 대표이사(이용진) : 2021.01.01. ~ 2021.08.24.
 - 3기 대표이사(오진이) : 2021.11.05. ~ 2021.12.31.

▶ 경영 및 성과평가 계획 보고 후, 평가 수행 및 결과 보고

다. 평가 방법 : 외부 전문기관 용역(수의계약)

- 1) 소요예산 : 16,000천원(구비)
- 2) 용역기간 : 2022. 2월 ~ 5월 중(약 3개월)

3. 평가일정표

2022. 2월	2022. 3월	2022.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계획 수립 2 평가용역 계약 3 용역착수보고서 제출 4 경영실적보고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5 경영평가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현장 · 대면 실사 / 고객 만족도 조사 및 이행실적 평가 ※ 중간점검 및 평가대상 기관 이의신청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7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 확정 8 결과 통보 및 활용 9 환류

4. 참고사항

가. 2022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지표(요약표) [붙임1]

나. 2022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요약표) [붙임2]

※ 용역 수행 시 변경 가능

다. 관계 법령 [붙임3]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8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6조

[붙임1]

☐ 금천문화재단 「기관」 경영평가 지표(안)

- 관리 영역 50점 + 경영 영역 50점

1. 관리 영역 평가지표 체계(I.지속가능경영+II.사회적가치)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I. 지속가능경영 (25점)	리더십 (12점)	1. 경영층의 리더십	6.0			
		1) 경영층의 리더십	2.0	정성		
		2) 조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 노력	2.0	정성		
		3) 이해관계자의 협력	2.0	정성		
		2) 코로나19 노력(가점)	+2.0	정성		
		2. 전략경영	6.0			
		1) 중장기 및 주요사업계획	3.0	정성		
		2) 외부 지적사항 이행	3.0	정성		
	경영시스템 (13점)	1.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6.0			
		1) 조직관리의 적정성	2.0	정성		
		2) 인사관리의 적절성	2.0	정성		
		3)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의 적절성	2.0	정성		
		2. 채용비리방지 (감점)	-1.5	정량		
		3.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감점)	-1.0	정량		
		4.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	5.0			
		1) 재정계획의 적정성	2.0	정성		
		2)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	3.0	정성		
		5. 인건비 인상을 준수	1.0	정량		
		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1.0	정량		
		계 (가점 및 감점 제외)			25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II. 사회적 가치 (25점)	일자리 확대 (5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5.0	
		1)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	2.0	정량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1.5	정성
		3)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1.5	정성
		4)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준수 (감점)	-1.0	정량
		5) 사전심의제 도입 및 운영 실적 (가점)	+1.0	정량
	사회적 책임 (20점)	1. 소통 및 참여	5.0	
		1) 고객 및 주민참여	2.0	정성
		2) 공공 노사상생 구축 및 유지 노력	1.0	정성
		3)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과 운영 적절성	1.0	정성
		4) 개별공시 및 통합공시 기준 준수 여부	1.0	정량
		2. 윤리경영	5.0	
		1) 윤리경영체계 구축 운영 노력 및 성과	2.5	정성
		2) 투명성 및 책임경영 성과 적절성	2.5	정성
		3. 인권경영	5.0	
		1) 인권경영 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	2.0	정성
		2) 인권경영 실행 공개 노력 및 제도화	2.0	정성
		3) 공정사회 구현 노력과 성과	1.0	정성
		4. 재난. 안전관리	4.0	
		1) 안전문화 정착	2.0	정성
		2) 재난 안전 관리 역량	2.0	정성
		5. 안전사고 건수	1.0	정량
		6. 지역상생발전	5.0	
		1) 지역경제 공헌 및 공익사업 추진실적	3.0	정성
		2) 사회적 약자 배려	2.0	정량
		3) 친환경 경영	1.0	정량
	계 (가점 및 감점 제외)			25

2. 경영 영역 평가지표 체계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III. 경영성과 (50점)	사업관리 (20점)	1.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정도	5.0	
		1) 사업에 대한 목표설정의 타당성	3.0	정성
		2) 자치단체 운영 방향과의 연계성	2.0	"
		2.사업추진체계의 적합성 및 타당성	5.0	
		1) 총괄조정 기능의 적합성	1.5	정성
		2) 사업연계성 확보 여부	1.5	"
		3) 프로세스 설계 및 운영 적합성	2.0	"
		3.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0	
		1) 당해연도 평가	6.0	정량
		2)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4.0	"
	사업운영 실적 (15점)	1.공연용 공간 가동 실적	5.0	
		1) 공연 사업 수행 노력의 적절성	2.0	정성
		2) 연간 가동율	1.5	정량
		3) 객석 점유율	1.5	"
		2.전시관람용 공간 가동 실적	5.0	
		1) 전시사업 수행 노력의 적절성	3.0	정성
		1) 연간 가동율	2.0	정량
		3.도서관 운영 활성화 노력	5.0	
		1)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적절성	2.0	정성
		2) 동아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건수	1.5	정량
	3)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실적	1.5	"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복지 (15점)	1 문화예술 향유	3.0	
		1) 문화향유 실적	3.0	정량
		2 문화예술 지원	3.0	
		1) 지원기관 실적	1.5	정량
		2) 수혜자 실적	1.5	"
		3 문화복지	3.0	
		1) 이용자 실적	1.5	정량
		2) 집행 실적	1.5	"
		4 문화예술교육	3.0	
1) 시도민 대상 프로그램 참여실적		1.0	정량	
2) 매개자 대상 프로그램 참여실적	1.0	"		
3) 매개자 대상 프로그램 참여단체 실적	1.0	"		
5 홍보활동 실적	3.0			
1) 언론보도자료 제공 횟수	1.0	정량		
2) sns 홍보실적	1.0	"		
3)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 노력 적절성	1.0	정성		
계			50.0	

[붙임 2]

☐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과평가지표(안)

영역	평가 부문	배점	평가지표	가중치	지표성격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장 역량	50점	1. 경영철학 및 윤리구현	16.0	정성
			경영철학의 설정과 실천여부	3.2	정성
			구정 목표 및 방향의 이해도	3.2	정성
			윤리수준 제고	4.8	정성
			거버넌스 관리	4.8	정성
			2. 조직관리	12.0	정성
			투명한 인사관리	3.0	정성
			조직역량 강화노력	3.0	정성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 및 성공	3.0	정성
			내부감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	정성
			3. 사업관리	12.0	정성
			주요사업관리의 적절성	3.6	정성
			기관 자립화를 위한 노력도	4.8	정성
			신규사업 발굴 노력	3.6	정성
			배점 합계		
고유사업 영역				60점	
합계				100점	

※ 상기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지표는 2021년 실시한, 2022년 경영평가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편람,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편람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며, 용역 착수 후 지표세부내용(지표별 정량 혹은 정성평가, 배점조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제16조(평가의 활용)

- ① 구청장이 제10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